

개정 근로기준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주요내용

□ 근로기준법령

-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*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116조제1항)

* ① 배우자, ② 4촌 이내 혈족, ③ 4촌 이내 인척(시행령 제59조의3)

-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(법 제76조의3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7항)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116조제2항, 시행령 별표7)

위반행위	과태료 금액(만원)		
	1차	2차	3차 이상
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조사 미 실시	300	500	500
피해근로자 보호조치(근무 장소 변경 등) 미 실시	200	300	500
가해근로자 조치(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) 미 실시	200	300	500
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	300	500	500

□ 외국인고용법령

-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(E-9)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, 미이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(법 제32조 제1항제2의2호, 시행령 별표)

- 사용자 교육 내용·방법·시간 등(시행규칙 제12조제1항)
 - 제공 :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제공
 - 내용 : 노동관계 법령, 인권, 산재예방, 보험제도, 행정 신고사항 등
 - 방법 :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
 - 시간 : 6시간

□ 시행일 : 2021.10.14부터